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4371     |
| 의 퇴 인 | 김준혁 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4.10.16. |
| 추계번호  | 24C4100     |

#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**국회예산정책처**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5조의3<br>(부담금의 산정<br>기준에 관한 특례) | 제5조의2제2항 <sup>1)</sup> 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<br>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<br>산정한다.<br>1. 공동주택: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×1천분의 2<br>2.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: 단독주택지 분양가격×<br>1만분의 35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규정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조의3<br>(부담금의 산정기준에<br>관한 특례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<br>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을 하향조정하  
는 내용임

-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을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공동주택 분  
양가격의 1천분의 8에서 1천분의 2로,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  
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천분의 14에서 1만분의 35로 하향조정함

1) 제5조의2(부담금의 산정기준)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 
부과하고,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  
1. 공동주택 :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×1천분의 8  
2.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: 단독주택지 분양가격× 1천분의 14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8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이 하향조정되어 이의 부과·징수액이 감소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근거가 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의 분양가격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  - 개정안에 따라 감소될 부담금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부과요율이 적용될 공동주택의 세대별 분양가격과 분양세대수, 단독주택지 분양가격과 면적 등에 대한 예상이 필요하나, 분양가격 등은 토지 및 건설비용, 인프라,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적 상황과 지역적 여건,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일률적 가정 및 예측이 곤란함<sup>2)</sup>
    - 참고로,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<sup>3)</sup>, 이에 2025년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운용계획은 없으며, 2024년도에 대해서는 총 3,598억원의 부담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였음
  - 이에 동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2) 참고로,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국 초·중·고등학교 733개교의 설립이 계획되어 있고, 이를 위한 학교부지 매입총액은 5조 9,6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, 이 중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액 1조 7,104억원을 제외한 4조 2,515억원이 지방자치단체(학교용지부담금 등)와 시도교육청의 부담분이 될 것으로 예상됨. 한편,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제2202363호)」을 발의하였으며, 동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재원 1조 1,638억원(2023.12.31.기준, 전국 합계)을 활용하여 2024년 이후 매입될 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. 다만, 이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지출에 대한 것으로 본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금 추계와 차이가 있음

3) 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

## I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정혜승 | 이진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정혜승 | 02-6788-4627 | hs0387@assembly.go.kr |